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6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정혜경·박홍배·이훈기

민형배 · 윤종오 · 김태선

이학영 • 전종덕 • 이재강

김남근 · 강득구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 ILO 등 국제기구는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음.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연동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 확대(직급 제한 폐지, 조합원 자격 기준 폐지, 소방공무원 단결권 보장)등 공무원노조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직무에 관한 가입제한이 남아있고, 비교섭 대상이 있어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치 활동 보장을 확대함(안 제3조 및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전임자 지위를 보장함(안 제6조 및 제7조).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강화하고, 교섭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단체교섭의 효력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장 수준에서 보장함(안 제10조 및 제11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본문을"을 "본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의무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징계를 할 수 없다.
- ④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차별적 처우의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차 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다. 제4조 중 "정치활동을"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를 "), 경찰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관리상 또는 정책결정상 책임을 가지는 고 위직공무원의 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이 제한된 고위직공무원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임용권자의"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로,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를 "노동조합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승급이나"를 "승급, 호봉이나"로, "신분과"를 "신분 및 보수지급과"로 한다.

③ 전임기간 중 전임자의 보수는 노동조합과 교섭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을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로 본다.

제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를 "전년도에"

로, "공개하여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총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를 ",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로, "인사혁신처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부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부처의 장관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를 "내용이 법률·조례의 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추가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률·조례 개정 안 또는 예산편성·추가경정안 제출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9조

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명령·규칙의 개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개정하거나 그 개정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성실이행의무, 제2항의 개정 및 개정요청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쟁의행위) ① 공무원의 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업무 중 긴급한 대면창구나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요 최소한도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은 제2항의 필요 최소한도의 업무범위, 필요 최소한도의 직무의 내용 및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를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	한계) ①
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	
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	
원법」 제58조제1항 <u>본문을</u> 적	<u>본문,</u>
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
	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u><삭 제></u>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공
	무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고, 징계를 할 수 없
	<u>다.</u>
<u><신 설></u>	④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신 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 과 그 조합원은 <u>정치활동을</u>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저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 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 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 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노동	<u> </u>	단체	ll교선	• 7	생의	행
위 7	기타의	행위	로서	제	1조	.의
목적을	을 달성	하기	위하	· 6=	한	정
당한	행위에	대さ	하여	적용	H된	다.
 다만,	폭력이	나 :	파괴호	행위	느	 정
당한	행위로	해/	 억되ㅇ	 서	는 는	아
니된다	 구.					
 3조의	_ 2(차별 ²	적 처	우의	금;	지)	국

제3조의2(차별적 처우의 금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합 조직, 가입 및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4조(정치활동의	금지)	
	-공무원의	지위
를 이용한 정치	<u> 활동을</u>	
세6조(가입 범위)	①	
	<u>.</u>	
1. (현행과 같음	-)	
2		

경찰공무원 및 군무원

- 3. 4.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 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 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
-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 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③ (생 략)
-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현행과 같음) <삭 제>

- ③ (현행과 같음)
- ④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관리 상 또는 정책결정상 책임을 가 지는 고위직공무원의 조합 가 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이 제한된 고위직공무원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u>임용권자의</u> 동의
 를 받아 <u>노동조합으로부터 급</u>
 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② (생 략)<신 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u>승</u> 급이나 그 밖에 <u>신분과</u> 관련하 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② (생 략)
 -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장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있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화거나, 임용권		
<u> </u>		
 ⓒ (취레기 7	d ()	
② (현행과 건 ③ 기기기기		1
③ 전임기간		
는 노동조합	과 교섭상	대방이
자율적으로 정	한다.	
4		
		<u>승급,</u>
<u>호봉이나</u>	<u>신분</u>	<u>및 보</u>
<u> 수지급과</u>		
제7조의2(근무시	간 면제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 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u>국</u>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 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개</u>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 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u>다만, 제5조제1항에</u>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있어서
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
·처·청(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포함
한다)을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①
- <u>전년도에</u>
고용노동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국민이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7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 의 보수 · 복지, 그 밖의 근무조 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 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 장 · 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 표한다) •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 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 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 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 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 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 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

알 수 있도록 총계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공개
할 수 있다.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u>,</u>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u>에</u>
<u>국</u>
<u> 무총리</u>
<u><단서 삭제></u>

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생략)
-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 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⑤ (생략) 제9조(교섭의 절차) ①・② (생 저 략)

-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 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 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 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행정부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부
처의 장관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에 응해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ll9조(교섭의 절차) ①·② (현행
과 같음)
<u><삭 제></u>

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 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 다.

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 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

<삭 제>

<삭 제>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

내용이 법률·조례의 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추가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률·조례 개정안 또는 예산편성·추가경정안 제출에 필요한 절차

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 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 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즉시 이행하여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명령·규칙의 개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개정하거나 그 개정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성실이행의무, 제2 항의 개정 및 개정요청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1조(쟁의행위) ① 공무원의 업 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71조의 공익사업으 로 본다.

- ② 제1항의 업무 중 긴급한 대 면창구나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필 요 최소한도의 업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은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생략)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 조, 제24조의2제1항 · 제2항, 제 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 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 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 지, 제60조제1항 · 제5항, 제62 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 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 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 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 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 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필요 최소한도의 업무
	범위, 필요 최소한도의 직무의
	내용 및 인원 기타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88조, 89조, 제91조, 제92조</u>
	<u>제1호</u>